

-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

專門委員 檢討報告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12월 10일

○ 회부일자 : 2004년 12월 10일

제안 이유

○ 충청북도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완하고 부패방지시책 등을 자문함으로써,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 골자

○ 감사위원회는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사항,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함(안 제2조)

○ 감사위원회는 7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3조 및 제4조)
- 5인은 도내에 거주하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위촉
- 2인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 감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7조)

○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으로 함(안 제8조)

□ 검토 의견

○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 충청북도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완하고 부패방지시책 등의 자문을 통해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는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며,(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은 7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은 도내에 거주하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2인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음.
(안 제3조 및 제4조)
- 또한 감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안 제6조)
-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
-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으로 하고 있음.(안 제8조)

○ 따라서 효율적인 감사행정의 추진과 투명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 다만, 안 제6조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등 회의개최를 구분하지 않고 부정기적 회의로 회의개최를 위원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정하는 목적과 기능의 충실한 이행에 다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의 지속적인 통합·폐지하는 추세에 있고, 자칫 회의개최가 부실해질 경우 위원회 운영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보충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